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차 례

■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2
■ 원서접수	3
■ 전형일정	4
■ 지원자격	5
■ 지원자격 상세내역	6
1. 재외국민	
2.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3. 북한이탈주민	
■ 지원자격 기준	7
■ 전형방법 및 고사내용	10
■ 지원자격 서류 제출 안내	14
■ 최종선발기준	18
■ 지원자 유의사항	19
■ 합격자 발표 / 등록금 납부 / 등록 포기	21
■ 전형료 / 전형료 환불	23
■ 학사안내	24
■ 미래융합전공 계열별 선택 가능 전공	25
■ 입학 관련 부서 전화번호	26
■ 서식 안내	27
- 자격서류심사 신청서	27
- 학력조회 동의서	30
- 학업능력 증빙서류 목록표	31
■ 국민대학교 약도 및 교통편 안내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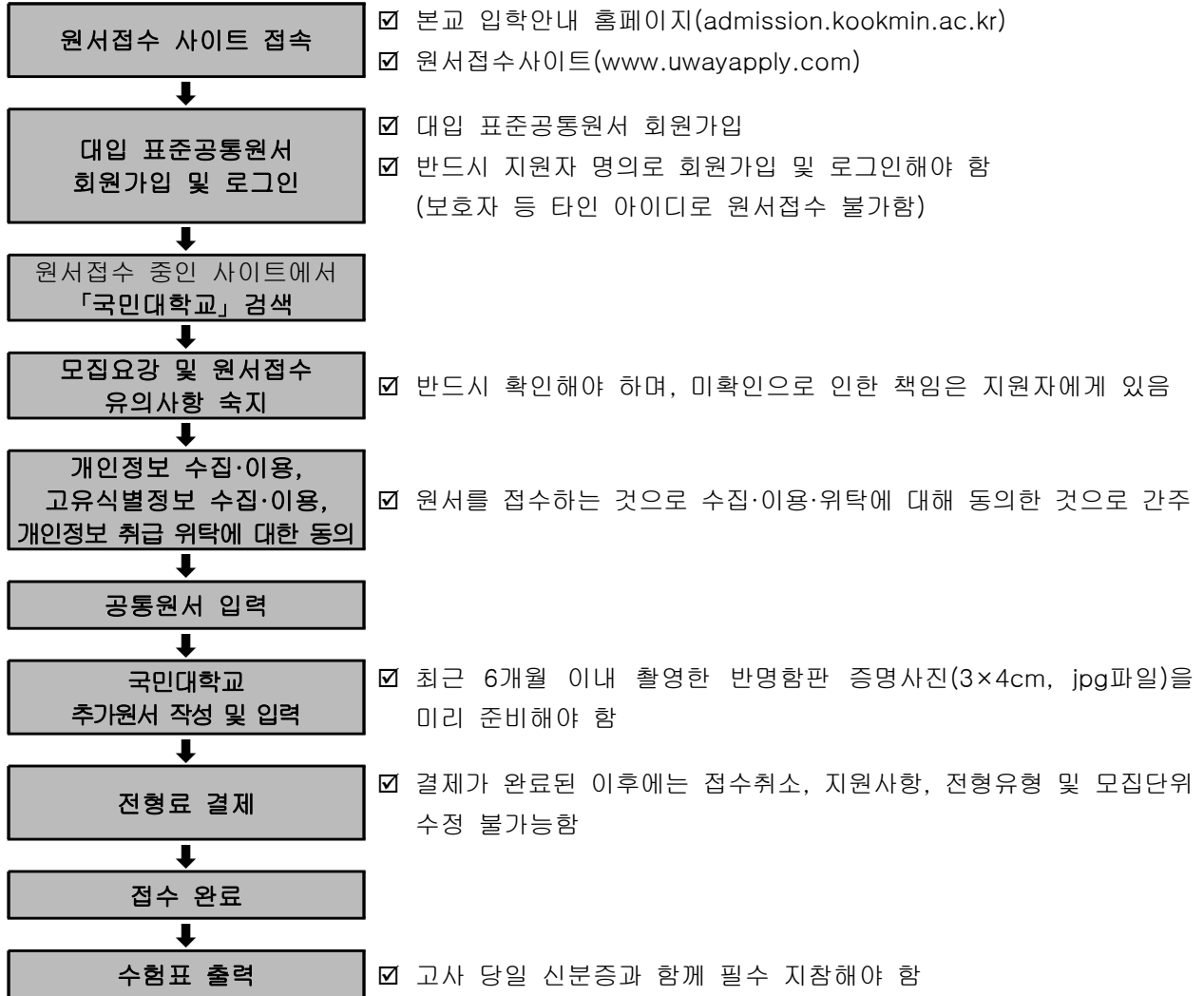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계열	대학	모집 단위	모집 인원(명)				모집 단위 내 학과·전공
			재외 국민	최대 모집 가능 인원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북한 이탈 주민	
인문	International College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4	4	○	○	International Business전공
	미래융합 대학	인문기술융합학부 미래융합전공(Ⅰ)	21	21	○	○	◦ 지원계열에 한하여 학부(과)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가능. 단, 전공자유선택제 선택불가 학부(과) 전공 제외
자연	미래융합 대학	인문기술융합학부 미래융합전공(Ⅱ)	21	21	○	○	
예·체능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1	1	○	○	
		시각디자인학과	1	1	○	○	
		금속공예학과	1	1	○	○	
		도자공예학과	1	1	○	○	
		의상디자인학과	1	1	○	○	
		공간디자인학과	1	1	○	○	
		영상디자인학과	1	1	○	○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1	1	○	○	
		시디디자인학과	1	1	○	○	
	체육대학	스포츠교육학과*	1	1	○	○	
		스포츠산업경영학과*		1	○	○	
스포츠건강재활학과*		1		○	○		
총 모집 인원			56				

- 단과대학으로 모집하는 경우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최대 모집 가능 인원 범위(입학정원의 10%)내에서 해당 단과대학별 전형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 (○) 표시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모집 단위별로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합니다.
- 입학 후 주간 학부(과)와 야간 학부(과) 상호 간 전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 (※) 표시된 모집 단위는 교직이 개설되어 있어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될 경우 교직과정 이수 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2026학년도 신입생 기준). 단, 학과·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 등 대학 편제 개편으로 교육부 교직이수 승인이 취소되거나 교직 승인 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nternational College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은 21세기형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전공 수업은 100% 영어 강의로 진행됩니다.
- 인문기술융합학부 미래융합전공(Ⅰ), 미래융합전공(Ⅱ) 합격자는 본인이 지원한 계열(인문 또는 자연)에서의 본교 내 학부(과)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가능(단, 일부학과 제외)
 - 전공자유선택제 선택불가 학부(과) 전공: 교육학과, 기업융합법학과, 기업경영학부, 회계세무학과, KMU International Engineering School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6.07.06.(월) 10:00 ~ 07.10.(금) 18:00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2.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별도의 원서 교부 및 방문 접수 없음)
3. 접수절차



※ 접수 마감일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마감시간 1시간 전에 미리 접수하여 지원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4.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접수 취소나 지원사항(전형유형, 모집단위 등) 수정이 불가능하니, 전형료 결제 전에 반드시 지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수험표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만 출력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6.07.06.(월) 10:00 ~ 07.10.(금)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admission.kookmin.ac.kr) ◦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서류제출 (온라인 제출)	2026.07.06.(월) 10:00 ~ 07.12.(일)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제출(업로드)기간 이후에는 입력 및 수정 불가 ◦ 조형대학(재외국민, 전교육과정, 북한이탈주민) 지원자는 면접고사용 작품집도 추가 제출 		
<p>※ 서류제출 기간 내에 지원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 제출서류는 온라인 업로드 시 PDF파일로 스캔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p> <p>※ 최종합격자는 추후 원본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예정)</p>				
면접고사 고사장 및 고사 시간 안내		2026.07.15.(수) 10:00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통보 없음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지정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개인별 지정일시는 변경 불가함 	
전 형 일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면접고사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해당)	2026.07.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예비소집 없음 ◦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 개인별 지정일시는 변경 불가함
	조형대학	면접고사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최초 합격자 발표		2026.09.04.(금) 17:00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통보 없음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함 	
최초 합격자 문서등록		2026.12.21.(월) ~ 12.23.(수)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등록 	
총원 합격자 발표/ 문서등록		2026.12.24.(목) ~ 12.2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함 	
등록금 완납		2027.02.10.(수) 10:00 ~ 02.12.(금)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납부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에 공지하니, 수험생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1. 재외국민(56명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자 격 기 준						
자 격 구 분	자 격 요 건	최소 국외 재학·근무·체류 기간				
		학생		보호자 (부 또는 모)		보호자의 배우자 (부 또는 모)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재외국민의 자녀 - 국외 파견근무자 - 현지법인 취업자 - 현지 자영업자	3년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3/4	3년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2/3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2/3

가. 국외 재학기간 :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재학한 기간

나. 국외 근무기간 : 재직증명서상 근무 시작일과 출입국사실 증명서상 출국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재직증명서 상 근무 종료일과 최종 귀국일 중 이른 날까지 해당국에서 근무한 기간

다. 국외 체류기간 : 출입국사실 증명서상 해당국 체류일수를 합한 기간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단, 검정고시 등의 학력 인정 방법은 제외)

※ 1년 2학기제 기준이며 1년은 365일 기준으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3년=1,095일)

2.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정원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3. 북한이탈주민(정원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자격 상세내역]

1. 재외국민

가. 국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지원 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 3)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국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이 되지 않은 곳에 단순 파견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해외근무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등은 국외 파견근무자의 자녀로 봄

나. 현지법인 취업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 3) 현지법인 취업자의 자녀

다.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 3)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의 자녀

2.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정원 제한 없음)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나.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 재학 학기가 있어도 국외에서 해당 학기를 중복 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학년제가 동일한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3. 북한이탈주민(정원 제한 없음)

-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북한이탈주민 전형 자격기준 충족자

[지원자격 기준]

1. 공통 안내 사항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학기 등 지원 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중복 관련 지원 자격 충족 사례>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학기 대체 가능

→

중복학기 대체 가능

→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2. 재외국민 지원 자격 심사기준

가. 국외 근무자

- 국외 근무자란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를 말합니다.

나. 국외근무자의 자녀

- 국외근무자의 자녀는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를 말합니다.

다. 국외재학기간

- 지원자의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은 보호자의 외국 근무 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 1개 학년이 3term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2term을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2,3term을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합니다(3개의 term을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 3term제의 1term 또는 3term만 이수하거나, N학년의 3term과 N+1학년의 1term을 이수하는 등 본교의 1개 학기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칙적으로 1개 학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1개 학년이 4quarter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 2quarter를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3, 4quarter를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합니다(4개의 quarter를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 4quarter제의 1개 quarter만 이수하거나, N학년의 4quarter와 N+1학년의 1quarter를 이수하는 등 본교의 1개 학기 인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칙적으로 1개 학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학교에서 단순 어학 수업만 이수한 학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 ESL 과정, 어학연수 등).

라.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하며, 방학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마.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근무기간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시작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출국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종료일과 최종 귀국일 중 이른 날까지 해당국에서 근무한 기간
체류기간	근무와 재학이 중첩되는 기간 내에서 해당국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 근무 증빙서류(세금 납부 증빙서류 등)는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 세부 지원자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심사기준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4. 외국학교 인정 기준

- 외국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학교는 해당국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만을 인정하며, 유아원, 유치원, 여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에 한하며, 보호자(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체제(공산권 국가 등) 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국 수학 인정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본교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부모의 근무국에서 자녀의 인정기간과 동일하게 거주 및 근무(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이상)해야 합니다(근무/체류/재학이 중첩되는 기간만 재외국민 지원자격 기간으로 산정).
- 우리나라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7년 2월 말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합니다.
 - ※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한국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국외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은 외국학교 재학기간과 무관합니다.
-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은 부모의 자격과 무관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중동지역 분쟁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전형방법 및 고사내용]

■ 전형방법

1. 재외국민

모집 단위	전형형태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서류평가	면접고사	계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인문기술융합학부 미래융합전공(Ⅰ) 인문기술융합학부 미래융합전공(Ⅱ) 체육대학	일괄합산	100%	100% (1,000점)	-	100% (1,000점)
조형대학	일괄합산	100%	-	100% (1,000점)	100% (1,000점)

2.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모집 단위	전형형태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면접고사	계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인문기술융합학부 미래융합전공(Ⅰ) 인문기술융합학부 미래융합전공(Ⅱ) 체육대학	일괄합산	100%	100% (1,000점)	100% (1,000점)
조형대학	일괄합산	100%	100% (1,000점)	100% (1,000점)

■ 고사내용

1. 서류평가

가.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학업능력 및 활동증빙 서류목록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 제출서류 순서대로 작성 - 선택 제출
성적증명서 (10학년~12학년 기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업로드	-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국내 고교(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포함) 재학 또는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PDF 파일 변환 후 업로드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 작성자에 한함

※ 한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을 받은 후 업로드 해야합니다.

※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이 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관련 안내

1) 학업능력 및 활동 종류와 증빙서류 예시

종류	증빙 서류
해당국 대학입학시험 관련 성적·학력증명서	SAT, IB, AP, A-Level 등
수상경력	수상경력 증명서
어학능력 입증서류	TOEIC, TOEFL, TEPS, IELTS, HSK, JLPT, TORFL 등 인정(취득) 증명서
자격증 및 봉사활동 등 기타활동	자격증,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입증 서류

2) 제출 서류 규격

- 가) 항목: 지원자가 판단하는 우선 순위가 높은 10개 항목
- 나) 증빙서류 페이지 기준: A4 기준 총 20페이지 이내
- 다) 용량: **12MB 이내 1개의 PDF 파일**

3) 서류 작성 방법

- 가)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1장씩 정리하여 총 20페이지 이내로 구성합니다.**
- 나) 2장 이상으로 구성된 1건의 서류의 경우, 총 20페이지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할 페이지를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다) **A3 -> A4 등의 A4 사이즈로의 단순 축소·확대 복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A4 1장에 여러 장의 서류를 축소 복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국 언어로 작성되어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공증을 받은 경우는 원본과 번역본을 축소하여 1장으로 편집하여 제출)
- 라) 공증,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등으로 인하여 서류가 책자나 철 형태로 묶음 처리된 경우,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로 제출할 페이지를 1장씩 스캔하여 제출합니다.

4) 제출시 유의사항

- 가) **지원자 본인의 재학 기간을 기준으로 10학년 ~ 12학년의 3년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1학년제 학교 졸업(예정)자: 9학년 ~ 11학년 / 13학년제 학교 졸업(예정)자: 11학년 ~ 13학년
- 나) 증빙서류의 취득일이 지원자 본인의 고교 과정 재학 기간 기준 외의 일자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는 반드시 목록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공인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해당 서류 발급처의 지원자 ID/PW를 포스트잇 등으로 별도 기재하여 본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해야 합니다.
- 마) 발행기관이 없는 서류 및 실적물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진, 발표 자료, 신문, 개인 제작 포트폴리오 등)
- 바) 모든 서류는 A4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별도 양식은 없으며, A4 기준으로 확대/축소를 진행할 경우 서류의 판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사) **서류 편집(별도 설명 기재 등)은 불가합니다.**
- 아) **추천서는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 공식적인 문서로 증빙이 가능한 서류만 인정하며, 확인을 위해 서류평가 중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차)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합격 후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카) 제출서류 업로드 마감 이후는 내용 수정 및 추가 업로드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마감 전 입력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서류평가 안내

1) 평가방법

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아래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나)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 주요 내용
자기주도성 (30)	1. 국내·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였는가? 2. 국내·외 고등학교 내의 교육활동 외에도 스스로 다른 활동을 찾아서 진행해왔는가?
도전정신 (20)	1. 단순 교육 성취 수준 외에도 다른 활동을 통한 노력이나 향상심이 보이는가? 2. 본인의 발전 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진행해 보았는가? 3. 국내·외의 환경적 차이에 대한 적응 노력과 태도가 보이는가?
전공잠재력 (25)	1.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와 학업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2. 진로탐색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왔는가? 3. 해당 전공에 대한 진로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가?
학업능력 (15)	1.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2. 국내·외 고등학교에서의 학업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공동체의식 및 협동능력 (10)	1. 공동체 활동에서의 나눔, 배려, 협력의 관계를 실천할 수 있는가? 2. 다양한 단체활동 속에서 리더십과 협력정신 등을 보였는가?

2) 서류 평가 관련사항

가) 지원자의 고교 교육과정 및 고교 재학 중 기타 교육활동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평가합니다.

나) 교과 성적 이외의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또한 본교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 단순 성취 수준 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 진행 과정 중 느끼고 학습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라) 학교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를 모두 종합하여 지원자의 최종 서류평가 점수를 부여합니다.

2. 면접고사

모집 단위	면접고사 내용 및 배점				비고
	기본소양 I	기본소양 II	작품집		
[조형대학] - 재외국민 - 초·중·고 전교육 과정 해외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25% (250점)	-	75% (750점)	작품수준 25% (250점) 전공지식 25% (250점) 표현력 25% (250점)	[조형대학 작품집 규격] ·작품: 평면/입체작품 10점 이내 ·규격: 작품 1점당 A3 이내의 인쇄물/출력물 1장 기준 ·유의사항: 지원자 식별 가능한 표식 절대 금지 [작품집 제출 안내] ※ 업로드 기간 내 면접 시 지참할 작품집을 1개의 PDF 파일(10MB 이내)로 변환하여 등록 해야 함 (미등록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면접고사 시 작품집 지참 안내] ※ 면접 시 작품집을 반드시 지참 해야 함 (미지참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 초·중·고 전교육 과정 해외이수자 [조형대학 제외] - 북한이탈주민 [조형대학 제외]	50% (500점)	50% (500점)	-	[기본소양 I, 기본소양 II] ·출제내용: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 ·평가내용: 수험생의 기본 자질 및 품성 등 평가 ·면접방법: 출제된 문제 열람 후 질의응답 형식의 개별 구술면접	

[지원자격 서류 제출 안내]

1. 지원자격 서류 목록 (서류제출 기간 내 온라인 제출)

순번	서류명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 주민	비고
		국외 파견근무자	현지법인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1	자격서류 심사 신청서	○	○	○	○	○	- 입력사항 출력 후 온라인 제출
2	초등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	○	○	○	해당자	
3	중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	○	○	○		
4	고등학교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	○	○	○		
5	학사일정 (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	○	○	○		
6	학력조회 동의서	○	○	○	○		- 입력사항 출력 후 온라인 제출
7	가족관계증명서	○	○	○			- 학생 기준
8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학생)		- 학생 및 부모
9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	○	○ (학생)		- 학생 및 부모
10	여권사본	○	○	○	○ (학생)		- 학생 및 부모
1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			- 학생 및 부모
12	근무자 재직증명서(파견증명서)	○	○				- 국가명과 국외근무기간 명시
13	가족관계 관련 별도 서류	해당자			해당없음		
14	제3국 수학인정 신청서	해당자			해당없음		
15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또는 해외지점(사무소)설치신고서	△ (주재원)					- 신고(허가)일이 보호자의 근무 시작일 이전이어야 함
16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 학생의 재외국민 자격기간 이상의 서류
17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또는 해외 세금납부 사실증빙서류		○	○			
18	외국국적증명서				해당자		
19	외국인등록증 사본						
20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21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혹은 학력인정증명서					해당자	
22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세부 안내사항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p.15~16)을 반드시 참조하여 서류를 준비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학년 및 재학기간(전입·전출일자 포함) 기재 (재학기간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재학(사실)증명서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6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및 최종 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증명서 제출

※ 학사일정 (School Calenda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 해당 외국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가능(홈페이지 출력 시 웹사이트 주소 표기)

※ 가족관계 관련 별도 서류

- 부모 이혼 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재직관련서류

- 모든 지원자는 재직증명서 외에 15~17번의 재직 형태 중 하나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서류 업로드 기간 : 2026.07.06.(월) 10:00 ~ 07.12.(일) 16:00

-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자격미달 처리됨)

3.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 1)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 최종 합격자는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해외에서 발급하는 아래의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 초·중·고교 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2. 보호자의 재직 관련 증명서
3. 보호자의 세금 납부 관련 증명서	4. 보호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생의 재학 관련 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발급을 면제하므로 해당 증명서만 제출함

- 4) 국내학교(교육부 인가를 받은 해외 한국학교 포함) 졸업(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6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최종합격자는 입학일 전까지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6) 외국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전입,전출일자 포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학(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7) 학력조회 동의서는 재학한 외국 소재의 학교 수 만큼 작성해야 하며 ‘학교정보-이메일’에는 해당 외국 학교의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국외 거주 또는 재학했던 국가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9)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10) 제출서류상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서류별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이나 재외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1) **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2) 비자발급용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 유학비자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 13)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 또는 한국의 교육청에 준하는 정부 기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14) 근무·체류 등 모든 서류는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5) 보호자의 자격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17.02.01. ~ 2019.02.01. 해외파견근무 / 2019.02.02. ~ 2020.03.02. 현지법인근무]
위의 경우 2019.02.01.까지는 해외파견근무자의 자격 서류를, 2019.02.02.부터는 현지법인 취업자의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함
- 16) **졸업일 기준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는 최종 합격자 (2027년 2월 졸업자, 일본 등 일부 지역은 3월 졸업자)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보호자의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졸업일 시점에 맞추어 추가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되며, 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 17)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체제(공산권 국가 등)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 제3국 수학인정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세부 지원자격별 유의사항

가. 국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 '본사 발급분'만 인정하며 파견국가 및 파견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본 또는 해외지점(사무소)설치 신고서 사본 : 근무 시작일 이전 신고된 서류만 인정하며 반드시 본사 또는 은행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와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해외지점(사무소)설치 신고서상의 회사명이 다른 경우 동일 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현지법인 취업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해당국 기관 발급(지사 소속인 경우 해당국 지사 발급)분만 인정하며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계약서 또는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현지 법인등록증 : 해당국에서 발급받은 법인등록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 법인등록일이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현지법인 대표일 경우 '법인등록증'에는 대표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폐업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 현지법인 대표 및 취업자 : 법인세 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제출
 - ※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는 연도별 발급을 원칙으로 함
 - ※ 반드시 지원자의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상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면세자 등 세금납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국 세무법령 및 본인이 그에 해당한다는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다.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등록일은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보호자의 이름이 대표 또는 공동투자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면세자 등 세금납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국 세무법령 및 본인이 그에 해당한다는 정부 기관의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

- ☞ 명칭 : 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생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29개 국가 및 지역(2025.3.30. 기준)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키르기스스탄,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계	129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7. 14.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서 관련 문의 : 외교부 관련 홈페이지(<http://www.0404.go.kr>)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 T: 02-6747-0404

서류 위·변조,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합격(입학) 무효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최종선발기준]

1. 모든 전형은 일괄합산 전형을 실시하며, 자격심사 후 인정 기준 충족자 내에서 각 모집 단위별 전형요소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와 북한이탈주민은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합니다. 단, 교육과정 이수율 위한 학업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서류평가용 성적증명서 미제출자, 면접고사 결시자(응시포기자 포함), 지원자격 검토 서류 미제출(미비)자,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4. 면접고사에서 'F'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5. 각 모집 단위별 전형총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구 분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1. 서류평가 자기주도성 점수 고득점자 2. 서류평가 전공잠재력 점수 고득점자 3. 서류평가 도전정신 점수 고득점자 4. 서류평가 학업능력 점수 고득점자
조형대학	1. 면접고사 작품수준 성적 고득점자 2. 면접고사 전공지식 성적 고득점자 3. 면접고사 표현력 성적 고득점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1. 공통사항

- 가. 지원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으나, 8~9호 조치가 있는 부적격 지원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합니다.
- 나. 복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조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 전형별 사정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조치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합격 후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반영방법

전형명	전형 만점	조치사항별 감점 기준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1,000	정성평가						부적격	부적격	

※ 정성평가 운영 방법

- 8호(전학), 9호(퇴학)의 경우, 타 전형과 동일하게 불합격 처리
- 기타(호)의 경우 서류·면접평가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준표를 반영하여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지원자 유의사항]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사항

- 1) 복수지원 허용: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6개 전형 이내에서만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2) 복수지원 금지사항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를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됩니다.
 - ◆ 전형이라함은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 모든 전형을 의미합니다.
 - ◆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하는 접수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유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모든 대학의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3)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문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등록확인 예치금 납부기간 포함)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문서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본교 수시모집 문서 등록은 대학에 등록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문서 등록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 다수의 대학에 문서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총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총원 합격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총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합격 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 본교는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방법 대신 문서 등록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 등록은 합격자 조회 후 본교에 등록을 하겠다는 등록 의사 표현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1)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사항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 2)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입학자에 대한 조치

- 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위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 3) 본교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위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대학입학 전형원칙

- 가.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서류평가용 서류 미제출자, 면접고사에 결시(포기)한 자는 입학전형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 2027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가 2027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단,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3. 본교 지원 관련 사항

- 가. 본교 수시모집 각 전형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간에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 나. 본교 수시모집 전형에 중복 합격 시 반드시 1개 전형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 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합니다.**
- 라. 입학원서 및 자격서류심사 신청서에는 전형 및 심사기간 중 연락 가능한 지원자의 국내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였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교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자는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의 ‘지원자 정보수정’을 통해서 반드시 변경해야 함
- 마. 면접고사에 대한 별도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2026.07.15.(수) 10:00(예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의 ‘고사장 안내’를 통해 수험생의 고사 일시를 확인하여 고사 당일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고사 시작시간 이후 도착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음
- 바. 전형일 당일 수험표(원서접수 완료 후 출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사진이 부착된 청소년증(국내 고교 재학생에 한함)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사.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
 ※ 수험표가 없으면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음
- 아. 조형대학 지원자는 면접고사 시 서류제출 기간 내 업로드한 작품집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작품집 미지참자는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 자.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차. 본교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카. 본교 제출서류는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추후 서류 위·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되며, 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 타. 2027년 2월 졸업예정자가 2027년 2월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7년 2월 말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한국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 파.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및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하. 기타 지원자가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합격자 발표]

-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수험생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 여부를 조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합격자 확인,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장학금과 관련하여 해당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출력해야 합니다(추후 출력 불가능).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총원합격자 발표시, 수험생의 합격자 조회여부와 상관없이 본교에서 합격자로 발표한 자는 모두 총원합격자로 간주합니다.
- 총원합격자 발표시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전화번호 및 주소) 오류나 3회 전화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 두절 등으로 수험생에게 총원합격 통보가 되지 않더라도 총원합격자로 처리되어 정시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문서 등록을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합격이 자동 취소됩니다.
- 등록금 완납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합격자 유의사항에 포함되어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1. 최초 합격자 발표

- 가. 발표 일시 : 2026.09.04.(금) 17:00 예정
- 나. 발표 방법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

2. 미등록 총원 합격자 발표

- 가. 총원 합격자 발표기간 : 2026.12.24.(목) ~ 12.29.(화) 18:00까지
- 나. 총원 합격자 등록기간 : 2026.12.24.(목) ~ 12.30.(수) 16:00까지 일자별 등록시간은 추후 공지
- ※ 총원 합격자 발표방법 및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총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1. 합격자 등록일자

구 분	최초 합격자	총원 합격자
문서 등록	2026.12.21.(월) 10:00 ~ 12.23.(수) 16:00	2026.12.24.(목) ~ 12.29.(화) (일자별 등록시간은 추후 공지)
등록금 완납	2027.02.10.(수) 10:00 ~ 02.12.(금) 16:00	

- ※ 문서 등록이란 본교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별도의 예치금 납부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한 등록임
- ※ 자세한 등록 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유의사항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등록 관련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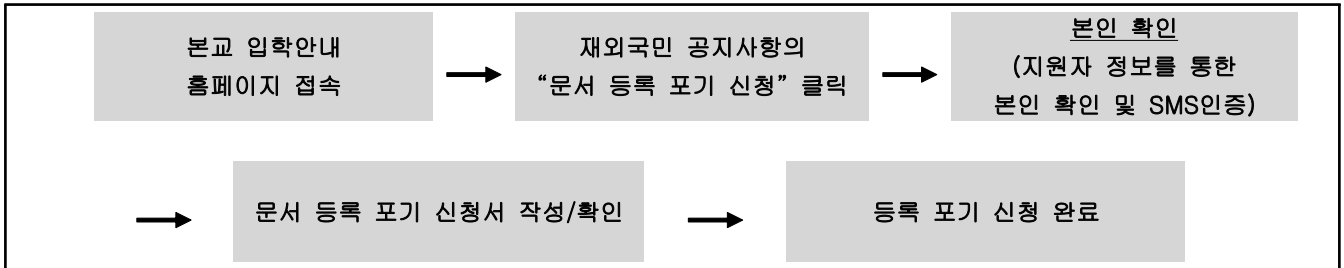
- 가. 문서 등록 마감일시까지 문서 등록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총원합격자 포함)에는 합격이 자동 취소되며, 이 경우에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대학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나. 등록금 완납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합격자 유의사항에 포함되어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다. 부정합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에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등록 포기]

1. 문서 등록 포기

본교에 합격하여 문서 등록을 진행했으나 이후 합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2026.12.30.(수) 16:00 이전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등록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포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차순위 예비 순위자의 대학 입학기회가 박탈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환불

등록금 완납 후 등록을 포기하고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등록포기(환불)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학 전후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형료]

모집 단위	전형료(원)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조형대학
재외국민	150,000	130,000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30,000	
북한이탈주민	70,000	70,000

※ 북한이탈주민은 전형료 일부(60,000원)가 감면된 금액임

[전형료 환불]

1.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사 응시가 불가능함을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아래 전형 포기 신청기간에 따라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사유: 천재지변, 질병, 본교 고사일자 사후 변경 등

※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면접고사 전형 응시자가 타학교와의 전형일 중복을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전형료 환불은 불가

※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전형 포기 신청기간	환불금액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원서접수 마감 다음날부터 전형일 1일 전까지	자격서류 심사비 + 전형료(자격서류 심사비 및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 금액)의 50%
전형일 이후	환불금액 없음

2. 전형료 반환

가.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나.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교 직접 방문

다.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학사 안내]

1. 신입생 장학금

국민대학교는 교내/외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혜택의 종류와 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 국민대학교
Entrepreneurship, The KOOKMIN

2. 생활관(기숙사) 안내

국민대학교 생활관은 교내를 비롯하여 교외 여러 곳에 있으며, 면학 분위기를 고양하고 진리 탐구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교내/외 추가 생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교내 생활관
- 교외 생활관 - 길음, 정릉, 제2정릉, 원릉 생활관



기업가정신, 국민대학교
Entrepreneurship, The KOOKMIN

3. 통학버스 운행 안내

국민대학교는 서울 시내 주요 권역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주요 지하철, 버스 등 편리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호선 시청역
- 2호선 잠실역, 신촌역
- 3호선 압구정역, 불광역
- 4호선 길음역
- 5호선 광화문역



기업가정신, 국민대학교
Entrepreneurship, The KOOKMIN

4. 국제교류 프로그램 안내

국민대학교는 국외대학 및 기관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차별화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선진 학문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얻음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창의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교환학생
- 방문학생
- 복수학위
- Sungkok Global Exposure 프로그램
- 어학연수 프로그램
- Global Peers 프로그램



기업가정신, 국민대학교
Entrepreneurship, The KOOKMIN

[미래융합전공 계열별 선택 가능 전공]

1. 미래융합전공(Ⅰ)

대 학	전 공
글로벌 인문·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한국어문학부 글로벌한국어전공
	영어영문학부 (영미어문전공,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전공)
	중어중문학과
	한국역사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미디어·광고학부 미디어전공
	미디어·광고학부 광고홍보학전공
	러시아·유라시아학과
법과대학	동아시아국제학부 (일본학전공, 중국학전공)
	법학부 (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경상대학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경영정보학부 (비즈니스IT전공)
	S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International College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International Business전공)

2. 미래융합전공(Ⅱ)

대 학	전 공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에너지·모빌리티재료전공
	신소재공학부 전자화학재료전공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건설시스템공학부(건설시스템공학전공)
	전자공학부 지능형반도체융합전자전공
	전자공학부 지능형ICT융합전공
바이오융합대학	전자공학부 모빌리티전력전자융합전공
	산림기후환경학과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바이오의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융합바이오공학과
양자융합대학	제약공학과
	양자융합공학과
	정보보안암호수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에너지반도체화학공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전공)
건축대학	인공지능학부 (인공지능전공)
	건축학부 (건축설계전공, 건축학전공)
자동차모빌리티대학	자동차모빌리티대학 (자동차공학과, 자동차IT융합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입학 관련 부서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안내사항
입학팀	(02) 910-4123~9 (02) 910-5703~20	입학전형 안내 및 제반 업무
국제교류팀	(02) 910-5803, 5806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 관련 업무
글로벌인문·지역대학	(02) 910-4353	각 단과대학 안내
사회과학대학	(02) 910-4423	
법과대학	(02) 910-4483	
경상대학	(02) 910-4513	
경영대학	(02) 910-5202	
공과대학	(02) 910-4653	
소프트웨어융합대학	(02) 910-5283	
자동차모빌리티대학	(02) 910-5502	
바이오융합대학	(02) 910-4793	
양자융합대학		
건축대학	(02) 910-6523	
조형대학	(02) 910-4583	
예술대학	(02) 910-4463	
체육대학	(02) 910-4883	
미래융합대학	(02) 910-6863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02) 910-5090	
교무처 교무팀	(02) 910-4039	
	(02) 910-4037	휴학, 전부(과), 다/부전공
	(02) 910-4046, 4050	증명서 발급
총무처 재무팀	(02) 910-4156	등록금 수납 및 환불
학생처 학생지원팀	(02) 910-4055	국가장학금
	(02) 910-4054	교내장학금
	(02) 910-4057	학자금대출
경력개발지원단 진로지원센터	(02) 910-4067~8	취업
학생처 병무지원팀	(02) 910-4891	병무
생활관	(02) 910-5976	기숙사
출판부	(02) 910-4242	교양교재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한 내용에 따라 자동 완성되므로 원서접수 완료 후 출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안내]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자격서류심사 신청서

※ 아래 기재내용이 틀림없으며, 허위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 심사 확인란	심사위원	심사결과	특이사항
	(인)		
	(인)		

※ “심사확인란”에 기재하지 마십시오 (국민대학교 입학처에서 작성함).

▣ 지원사항 및 지원자 인적사항

지원사항		모집 단위				수험번호		
지원자 성명	한국어							
	영문							
주민등록번호		-			가족사항	부 (<input type="checkbox"/> 근무자) 모 (<input type="checkbox"/> 근무자) (√표기바람)		
외국인등록번호 (해당자)		-						
최종출신고교						졸업일자	년 월 일 졸업 (예정)	
지원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긴급 연락처	추가1	관계		연락처		비고		
	추가2							
	추가3							
	추가4							
	추가5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대로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이중 국적자는 보유국적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생년월일, 뒷자리 7자리는 (남자)1000000 (여자)2000000으로 기재 (예:2002년1월28일생 여자 외국인일 경우 → 020128-2000000)

■ 지원자격 구분 및 특이사항

지원자격 유형	지원자격 구분 (해당 칸에 √ 표기)
국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국외 파견근무자
현지법인 취업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현지법인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현지 자영업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input type="checkbox"/>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특이사항	
※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월반·휴학, 기간중복, 부모의 자격, 부모 이혼 및 사망, 본인 입양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시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용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의 재외국민 지원자격기간 중 외국소재 출신학교 관련사항 기록 (※ 빠짐없이 모두 기록할 것)

학교명 (초, 중, 고 순)	학교 수업 / 방학 기간				학교 연락처 (2026년 7월 현재 기준)	
	1학기		2학기		학교 주소	
	수업기간	방학기간	수업기간	방학기간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교사) E-Mail 홈페이지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기타 특이사항	3학기제 : 기 타 :					

※ 학교는 해외 소재 학교만 기재하고, 해당 학교의 공식명칭을 기입하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및 전화번호는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반드시 함께 표기하기 바랍니다. (예: 82-2-320-1058)

※ 자격서류심사 전 과정(지원자격, 학력조회 등)에서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허위, 누락 기재 시 입학(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LETTER OF CONSENT(학력조회 동의서)

To whom it may concern :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I attended (* 본인이 재학한 국외 초·중·고등학교 공식 명칭).

I have applied to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27 academic year and have agreed to allow Kookmin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Student's records>

Enrolled Name : _____

Date of birth : _____ - _____ - _____

Date of admission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 _____ - _____ - _____

Date of graduation (transfer to another school) : _____ - _____ - _____

※ 일자 표기 Example) 08 - 01 - 2026

(월:Month) (일:Day) (년:Year)

<School Information>

School Name : (영문) _____

(재학국 언어) _____

Address : (영문) _____

(재학국 언어) _____

Zip code : _____

Telephone Number : _____

Fax Number : _____

Email Address : _____

Sincerely yours,

Name and Signature

_____ - _____ - 2026
Month Date Year

※ 지원자는 재학한 국외 중·고등학교 수만큼 본 서식을 별도로 작성해야 함.

※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대표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가 아닌 학적조회 관련 부서의 것으로 반드시 표기해야 함.

※ 본 서식의 내용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

모 집 단 위		수 형 번 호	
성 명		출신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능력 및 활동 증빙서류는 최대 10개 항목,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의 고교 재학기간의 활동과 경험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의 학업 및 비교과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교내·외 활동을 모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양면복사, 20페이지 초과 등 제시한 기준 이외의 부분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발행기관이 없는 서류 및 실적물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사진, 발표 자료, 신문, 개인 제작 포트폴리오 등). - 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등록 이후 원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서류명(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50자 이내)	발급일자(기간)	발급기관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국민대학교 약도 및 교통편 안내]



무료 셔틀버스 운영

서울시내 주요7개 권역 24대 통학버스 무료 운영



기업가정신, 국민대학교
Entrepreneurship, THE KYOONGHEE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종각역 → ①번 출구 → 1020번(교보문고 방면 200m) → 국민대
- 2호선 신촌역 → ①번 출구 → 110번, 163번(동교동 방면 250m)
- 3호선 경복궁역 → ③번 출구 → 1020, 1711번(자하문 방면 50m 아래) → 국민대
- 4호선 길음역 → ③번 출구 → 171, 1213, 7211번 → 국민대
- 5호선 광화문역 → ②번 출구 → 1020, 1711번(한국통신 앞) → 국민대
- 3,6호선 연신내역 → ④번 출구 → 7211번 → 국민대
- 우이 경전철 정릉(국민대입구)역

지선버스 이용시

- 1020번(정릉산장아파트 ↔ 국민대 ↔ 종로1가)
- 1116번(국민대 ↔ 미아삼거리), 1213번(국민대 ↔ 청량리)
- 1711번(국민대 ↔ 광화문 ↔ 공덕동), 7211번(기자촌 ↔ 국민대 ↔ 신설동)

간선버스 이용시

- 110번(국민대 ↔ 제기동 ↔ 용산 ↔ 신촌 ↔ 국민대), 163번(우이동 ↔ 수유리 ↔ 국민대 ↔ 신촌 ↔ 대방역)
- 171번(국민대 ↔ 돈암동 ↔ 성대앞 ↔ 상암동)

내부순환로 이용시

- 일산 방면에서 왕십리 방향 이용시 : 정릉 Ramp 진출 후 U턴
- 왕십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 이용시 : 국민대입구 Ramp 진출 후 오른쪽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